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적극행정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효력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안 제13조 일부 개정)

- 위원장은 안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의결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면책추정(안 제16조 일부 개정)

-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감사원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9. 4. ~ 10.14.)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안의 복잡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과 협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2. 예산관리 및 계약 업무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제3항 본문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감사기구의 장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경우
2.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생 략)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안건을 심 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기구 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 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하며, 사안의 복잡성 등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극행 정 책임관과 협의하여 10일 범 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1. 법령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 는 경우
	2. 예산관리 및 계약 업무인 경 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 ② (생 략)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	③ ----- 제13조제1항-----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④ (생략)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Each set consists of a top solid line, a middle dashed line, and a bottom solid line. The set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providing ample room for practicing various letters and words.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감사기구의 장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경우

2.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연 락 처	(044) 201 - 8501